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7월 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개정(2003.5.29)으로 박물관·미술관 업무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·도로 이양됨에 따라, 박물관 미술관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

3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5. 관련법령 발취 : 따로붙임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심의 및 자문사항) ①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
 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
 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
 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
 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
 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·제거·이전 등에 관한 사항
 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
 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
 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- ②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	제5조(심의및자문사항) ①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	1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
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	2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
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	3.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(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
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	4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
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변경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	5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변경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
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·이전 등에 관한 사항	6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·이전 등에 관한 사항
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	7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
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8.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	9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
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	10.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
	②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관련 법령 발췌

【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】

제32조(중요사항의 자문)①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
2.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
2.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
3.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【문화재보호법】

제55조(시·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)

⑤시·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, 관리, 보호·육성,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